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6일 03시 51분

위해식품 등 회수사실

2009.03.10 조회수 555 등록자 최우복

위해식품 등 긴급회수

「식품위생법」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.

가. 회수제품명 : 조미오징어 나.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: 2009. 05. 30일까지 다. 회수사유 : 대장균 양성

(기준 : 음성) 라. 회수방법 : 영업자 자진회수 마. 회수영업자 : 해오름(주) 바. 영업자주소 : 강원 강릉시 주 문진을 교항리 523-13번지 사. 연락처 : 033) 661-8400 파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- 당해 회 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동제품을 구 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 : 회 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(담당자 보건위생과 김재범)

[목록](#)

이전글
목포시 참전용사 기념탑 제작설치사업 제안서 평...

다음글
제62회 서남권 아카데미강좌 안내

MokPo - Si
Web Contents

